

第238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4月16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환경오염손해에 대한배상책임법안(김원길 의원 대표발의)
2. 環境·交通·災害등에 관한影響評價法中改正法律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
3.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 관한법률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4. 건설폐기물등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5.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환경교육진흥법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7.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8.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시균 의원 대표발의)
9.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
10. 韓國資源再生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1.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13.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14.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5.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16.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7.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8.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19.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0.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21.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22.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23.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4.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5.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6.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
27.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28.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
29. 國家技術資格法中改正法律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3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안(정부 제출)
31.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2.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 관한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34.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
- 35.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 36.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37.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유용태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 1.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김원길 의원 대표발의)(김원길 · 강운태 · 김정천 · 김방림 · 김부겸 · 김영배 · 박주선 · 송석찬 · 안상수 · 오세훈 · 윤철상 · 이재오 · 이정일 · 장영달 · 정대철 · 정병국 · 정장선 · 조재환 · 천정배 · 한명숙 의원 외 1인 발의) 4
- 2. 環境 · 交通 · 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中改正法律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 · 강성구 · 강운태 · 광치영 · 김정천 · 김명섭 · 김화중 · 김희선 · 문석호 · 박상규 · 박상희 · 박양수 · 배기선 · 배기운 · 설송용 · 송훈석 · 이호웅 · 이훈평 · 정세균 · 조배숙 · 조재환 · 허운나 의원 발의) 4
- 3.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광치영 ·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 손학규 · 신현대 · 안영근 · 오세훈 · 윤여준 · 이주영 · 이창복 · 이호웅 · 조정무 · 정동영 · 정병국 의원 발의) 4
- 4.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강숙자 · 김영진 · 박명환 · 조배숙 · 정세균 · 김부겸 · 강운태 · 이원성 · 홍재형 · 김문수 · 오세훈 · 박인상 · 정동채 · 전재희 · 박양수 · 김원기 · 김운용 · 정대철 · 안동선 · 이강래 · 김홍일 · 김성순 · 김화중 · 김락기 · 박주선 · 김충조 · 김덕규 · 이승철 의원 발의) 4
- 5.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 6. 환경교육진흥법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강운태 · 김충조 · 김효석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천정배 · 강숙자 · 김부겸 · 박양수 · 이희규 · 전갑길 · 정철기 · 박인상 · 유재건 · 김방림 · 조배숙 · 정동채 · 김운용 · 최선영 · 정대철 의원 발의) 4
- 7.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강운태 · 김충조 · 김효석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천정배 · 김부겸 · 박양수 · 전갑길 · 정철기 · 유재건 · 김방림 · 조배숙 · 정동채 · 김운용 · 최선영 · 정대철 의원 발의) 4
- 8.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시균 의원 대표발의)(박시균 · 남경필 · 이원형 · 최영희 · 박종용 · 김홍신 · 심재철 · 정창화 · 홍준표 · 김명섭 · 민봉기 · 김용학 · 임인배 · 김광원 · 박승국 · 김성순 · 이상배 · 허태열 · 김동욱 · 이원성 · 권오을 의원 발의) 4
- 9.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김락기 · 정병국 · 김만제 · 함석재 · 김부겸 · 민봉기 · 오세훈 · 전재희 · 김성조 · 윤경식 · 박혁규 · 김정부 · 엄호성 · 윤두환 · 임진출 · 현승일 · 김기배 · 맹형규 · 박원홍 · 김문수 · 황우여 · 박승국 · 이근진 · 서상섭 · 김용학 · 임태희 · 이원형 · 이승철 · 안영근 · 김찬우 · 심규철 · 박창달 · 이윤성 의원 발의) 4
- 10. 韓國資源再生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 11.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 12.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조응규 · 김운용 · 박명환 · 유한렬 · 양정규 · 이승철 · 박혁규 · 박세환 · 김용갑 · 임인배 · 유흥수 · 정갑윤 · 김락기 · 정문화 · 이상배 · 김병호 · 김덕룡 · 전재희 · 김진재 · 홍사덕 · 오세훈 의원 발의) 4
- 13.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유흥수 · 정갑윤 · 김락기 · 정문화 · 이상배 · 김병호 · 김덕룡 · 김진재 · 홍사덕 · 조응규 · 김운용 · 박명환 · 유한렬 · 양정규 · 이승철 · 박혁규 · 박세환 · 김용갑 · 임인배 · 전재희 의원 발의) 4
- 14.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안상수 · 김호일 · 신기남 · 장성민 · 이재창 · 정인봉 · 심재권 · 김정숙 · 현경대 · 권기술 · 김근태 · 이해봉 · 조응규 · 강삼재 · 이재정 · 김원웅 · 유재건 · 이근진 · 허태열 · 하순봉 · 손태인 · 윤경식 · 정철기 · 정창화 · 이주영 · 심재철 ·

- 이원형 · 서상섭 · 송훈석 · 윤한도 · 윤두환 · 김성조 · 김형오 · 정대철 의원 발의) 5
15.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5
16.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안상수 · 김호일 · 신기남 · 장성민 · 정인봉 · 심재권 · 이재창 · 김정숙 · 현경대 · 권기술 · 김근태 · 이해봉 · 조응규 · 강삼재 · 이재정 · 김원웅 · 유재건 · 이근진 · 허태열 · 하순봉 · 손태인 · 윤경식 · 정철기 · 정창화 · 이주영 · 심재철 · 이원형 · 서상섭 · 송훈석 · 윤한도 · 윤두환 · 김성조 · 김형오 · 정대철 의원 발의) 5
17.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 · 곽치영 ·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 손학규 · 신현대 · 안영근 · 오세훈 · 윤여준 · 이미경 · 이부영 · 이주영 · 이창복 · 조정무 · 정동영 · 정병국 의원 발의) 5
18.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곽치영 ·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 손학규 · 신현대 · 안영근 · 오세훈 · 윤여준 · 이미경 · 이주영 · 이창복 · 이호웅 · 조정무 · 정동영 · 정병국 의원 발의) 5
19.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5
20.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오세훈 · 정병국 · 김용학 · 남경필 · 김락기 · 이성현 · 김홍신 · 김영춘 · 심재철 · 박인상 · 이호웅 · 안영근 · 김정숙 · 김무성 · 이승철 · 윤경식 · 원희룡 · 김부겸 · 엄호성 · 전재희 의원 발의) 5
21.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전재희 · 박양수 · 홍사덕 · 윤경식 · 이근진 · 박창달 · 박인상 · 김락기 · 신계륜 · 신현대 · 강숙자 · 이주영 · 서청원 · 이승철 · 김영춘 · 유홍수 · 최병렬 · 이재오 · 박희태 · 조응규 · 김무성 · 이연숙 · 강신성일 · 김원웅 의원 발의) 5
22.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강운태 · 김충조 · 김효석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천정배 · 김부겸 · 박양수 · 전갑길 · 정철기 · 유재건 · 김방림 · 조배숙 · 정동채 · 김운용 · 최선영 · 정대철 의원 발의) 5
23.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5
24.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5
25.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5
26.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5
27.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홍사덕 · 남경필 · 윤경식 · 김홍신 · 김덕규 · 정병국 · 박상희 · 박인상 · 김성조 · 전재희 · 도종이 · 김부겸 · 권철 · 서병수 · 김병호 · 정범구 · 김용학 · 김문수 · 원희룡 · 이우재 · 김영춘 · 이성현 · 손희정 · 박인상 · 이인배 의원 발의) 24
28.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박인상 · 이재오 · 김만제 · 함석재 · 민봉기 · 오세훈 · 김성조 · 윤경식 · 박혁규 · 김정부 · 엄호성 · 윤두환 · 임진출 · 김기배 · 맹형규 · 김문수 · 황우여 · 박승국 · 이근진 · 서상섭 · 김용학 · 이승철 · 안영근 · 강창희 · 권기술 · 김찬우 의원 발의) 24

29.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 의원 외 3인 발의) 24

3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24

31.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32. 산업재해보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33.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준 · 정범구 · 이종걸 · 김홍신 · 이강래 · 이훈평 · 천용택 · 송석찬 · 김상현 · 김경천 · 정동채 · 남궁석 · 김태홍 · 김희선 · 박인상 · 신기남 · 조한천 · 이호웅 · 김명섭 · 임종석 · 이미경 · 이재오 · 유재건 · 김택기 · 김화중 · 서상섭 · 최용규 · 김덕규 · 오세훈 · 김근태 · 김영환 · 김영진 의원 발의) 24

3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원희룡 · 이상희 · 김정숙 · 김성조 · 심규철 · 박종희 · 이인기 · 이방호 · 정병국 · 박혁규 · 임인배 · 윤두환 · 안영근 · 김학송 · 박원홍 · 이재창 · 김용학 · 임진출 · 서상섭 · 박재욱 · 이강두 · 이주영 · 김영춘 · 조정부 · 이승철 · 이성현 · 윤여준 · 김홍신 · 박세환 · 오세훈 · 박인상 · 박양수 · 최명현 · 이호웅 의원 발의) 24

35.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 · 문석호 · 설훈 · 김옥두 · 김근태 · 이강래 · 조재환 · 원유철 · 이재정 · 김덕규 · 이희규 · 최용규 · 장성원 · 유재규 · 박용호 · 정범구 · 이훈평 · 문희상 · 이근진 · 김희선 · 김태홍 · 박주선 · 전용학 · 안동선 · 장성민 · 임종석 · 이창복 · 김화중 · 이호웅 의원 발의) 24

36.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37.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유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 · 이낙연 · 박양수 · 이윤수 · 박인상 · 남궁석 · 조재환 · 이용삼 · 윤철상 · 최재승 · 함승희 · 최명현 · 전갑길 · 이재오 · 조한천 · 조배숙 · 송영길 · 김화중 · 광치영 · 김희선 · 전용학 의원 발의) 24

o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吳世勳위원)선임의견 28

(10시28분 개의)

○委員長 宋勳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김원길 의원 대표발의)(김원길 · 강운태 · 김경천 · 김방림 · 김부겸 · 김영배 · 박주선 · 송석찬 · 안상수 · 오세훈 · 윤철상 · 이재오 · 이정일 · 장영달 · 정대철 · 정병국 · 정장선 · 조재환 · 천정배 · 한명숙 의원 외 1인 발의)
2.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中改正法律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 · 강성구 · 강운태 · 광치영 · 김경천 · 김명섭 · 김화중 · 김희선 · 문석호 · 박상규 · 박상희 · 박양수 · 배기선 · 배기운 · 설송웅 · 송훈석 · 이호웅 · 이훈평 · 정세균 · 조배숙 · 조재환 · 허운나 의원 발의)
3.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광치영 ·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 손학규 · 신현태 · 안영근 ·

오세훈 · 윤여준 · 이주영 · 이창복 · 이호웅 · 조정부 · 정동영 · 정병국 의원 발의)

4.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강숙자 · 김영진 · 박명환 · 조배숙 · 정세균 · 김부겸 · 강운태 · 이원성 · 홍재형 · 김문수 · 오세훈 · 박인상 · 정동채 · 전재희 · 박양수 · 김원기 · 김운용 · 정대철 · 안동선 · 이강래 · 김홍일 · 김성순 · 김화중 · 김락기 · 박주선 · 김충조 · 김덕규 · 이승철 의원 발의)
5.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환경교육진흥법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강운태 · 김충조 · 김효석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천정배 · 강숙자 · 김부겸 · 박양수 · 이희규 · 전갑길 · 정철기 · 박인상 · 유재건 · 김방림 · 조배숙 · 정동채 · 김운용 · 최선영 · 정대철 의원 발의)
7.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강운태 · 김충조 · 김효석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천정배 · 김부겸 · 박양수 · 전갑길 · 정철기 · 유재건 · 김방림 · 조배숙 · 정동채 · 김운용 · 최선영 ·

정대철 의원 발의)

8.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시균 의원 대표발의)(박시균 · 남경필 · 이원형 · 최영희 · 박종웅 · 김홍신 · 심재철 · 정창화 · 홍준표 · 김명섭 · 민봉기 · 김용학 · 임인배 · 김광원 · 박승국 · 김성순 · 이상배 · 허태열 · 김동욱 · 이원성 · 권오을 의원 발의)
9.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김락기 · 정병국 · 김만제 · 함석재 · 김부겸 · 민봉기 · 오세훈 · 전재희 · 김성조 · 윤경식 · 박혁규 · 김정부 · 엄호성 · 윤두환 · 임진출 · 현승일 · 김기배 · 맹형규 · 박원홍 · 김문수 · 황우여 · 박승국 · 이근진 · 서상섭 · 김용학 · 임태희 · 이원형 · 이승철 · 안영근 · 김찬우 · 심규철 · 박창달 · 이윤성 의원 발의)
10. 韓國資源再生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1.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조웅규 · 김운용 · 박명환 · 유한렬 · 양정규 · 이승철 · 박혁규 · 박세환 · 김용갑 · 임인배 · 유홍수 · 정갑윤 · 김락기 · 정문화 · 이상배 · 김병호 · 김덕룡 · 전재희 · 김진재 · 홍사덕 · 오세훈 의원 발의)
13.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유홍수 · 정갑윤 · 김락기 · 정문화 · 이상배 · 김병호 · 김덕룡 · 김진재 · 홍사덕 · 조웅규 · 김운용 · 박명환 · 유한렬 · 양정규 · 이승철 · 박혁규 · 박세환 · 김용갑 · 임인배 · 전재희 의원 발의)
14.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안상수 · 김호일 · 신기남 · 장성민 · 이재창 · 정인봉 · 심재권 · 김정숙 · 현경대 · 권기술 · 김근태 · 이해봉 · 조웅규 · 강삼재 · 이재정 · 김원웅 · 유재건 · 이근진 · 허태열 · 하순봉 · 손태인 · 윤경식 · 정철기 · 정창화 · 이주영 · 심재철 · 이원형 · 서상섭 · 송훈석 · 윤한도 · 윤두환 · 김성조 · 김형오 · 정대철 의원 발의)
15.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태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16.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안상수 · 김호일 · 신기남 · 장성민 · 정인봉 · 심재권 · 이재창 · 김정숙 · 현경대 · 권기술 · 김근태 · 이해봉 · 조웅규 · 강삼재 · 이재정 · 김원웅 · 유재건 · 이근진 · 허태열 · 하순봉 · 손태인 · 윤경식 · 정철기 · 정창화 · 이주영 · 심재철 · 이원형 · 서상섭 · 송훈석 · 윤한도 · 윤두환 · 김성조 · 김형오 · 정대철 의원 발의)
17.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 · 광치영 ·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 손학규 · 신현태 · 안영근 · 오세훈 · 윤여준 · 이미경 · 이부영 · 이주영 · 이창복 · 조정무 · 정동영 · 정병국 의원 발의)
18.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광치영 ·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 손학규 · 신현태 · 안영근 · 오세훈 · 윤여준 · 이미경 · 이주영 · 이창복 · 이호웅 · 조정무 · 정동영 · 정병국 의원 발의)
19. 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태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20.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오세훈 · 정병국 · 김용학 · 남경필 · 김락기 · 이성현 · 김홍신 · 김영춘 · 심재철 · 박인상 · 이호웅 · 안영근 · 김정숙 · 김무성 · 이승철 · 윤경식 · 원희룡 · 김부겸 · 엄호성 · 전재희 의원 발의)
21.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전재희 · 박양수 · 홍사덕 · 윤경식 · 이근진 · 박창달 · 박인상 · 김락기 · 신계륜 · 신현태 · 강숙자 · 이주영 · 서청원 · 이승철 · 김영춘 · 유홍수 · 최병렬 · 이재오 · 박희태 · 조웅규 · 김무성 · 이연숙 · 강신성일 · 김원웅 의원 발의)
22.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강운태 · 김충조 · 김효석 · 김상현 · 김영배 · 송석찬 · 김원길 · 천정배 · 김부겸 · 박양수 · 전갑길 · 정철기 · 유재건 · 김방립 · 조배숙 · 정동채 · 김운용 · 최선영 ·

정대철 의원 발의)

23.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24.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25.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26.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이부영 · 윤여준 · 정병국 · 이주영 · 권오을 · 김홍신 · 안경률 · 이미경 · 김용학 · 이호웅 · 권기술 · 임인배 · 신현대 · 박원홍 · 안영근 · 오세훈 · 남경필 · 김문수 · 박혁규 · 조정무 의원 발의)

(10시30분)

○**委員長 宋勳錫** 의사일정 제1항 金元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 의사일정 제2항 李相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에서 제출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안, 의사일정 제7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朴是均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에서 제출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徐秉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徐秉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李仁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李仁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李浩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吳世勳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全在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의 법률안 심사로서 오전에 환경부 소관의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노동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의 법률안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6건으로 이 중에서 오늘 회의에 새로이 상정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난번 임시국회 시대체토론하지 못한 1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환경교육진흥법안, 의사일정 제7항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하여 李正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正一 議員**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교육진흥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70년대~80년대에 본격적으로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 사무용 빌딩 등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년까지는 연간 5000여만 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효율적 재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내 현실은 천연골재 자원의 심각한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부족한 골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건설폐기물을 불법·편법 처리하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는 적정처리된 엄청난 양의 고부가가치 재생골재가 인식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에 천연골재 채취로 훼손될 여의도 면적의 103배에 달하는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효과와 편익이 천연골재를 사용할 때보다 40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은 물론 관련업체도 고품질의 골재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정

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 법안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법률로 입법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생량과 순환골재 생산, 재활용 실적을 토대로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별 품질기준 및 지방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 등을 부여하여 재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재활용 대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여 천연골재 대체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순환골재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진흥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진흥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건강한 삶을 지속시켜 주고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사전예방적인 정책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을 제

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의 발굴과 보급, 환경교육 인력 및 담당 교원의 확보와 양성, 환경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환경교육정책의 심사와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는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책임 있는 환경교육이 되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 여러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한계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의한 동 법안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더 좋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 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나 오염된 토양의 범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범위의 파악을 단지 몇 군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갈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려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환경부령에 따라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에 대한 감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을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기관의 임무상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에 엄격한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만을 감리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관계로 감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염토양의 복원 과정과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경부령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감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런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복원사업에 대한 복원 과정과 사후 적합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동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토양환경보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李正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金樂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議員**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동 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지하 공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관리자로 하여금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운영·관리실태, 공기질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의 적정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교육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지하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의 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교육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조항 신설 등은 정부가 발의

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안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통합 심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金樂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徐秉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秉洙 議員**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횟수에 걸쳐 미납할 경우 부담금 증명 표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담금 미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의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 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수질개선 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도입하고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의한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포함토록 하고,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현행 “사업 개시 후 2개월 이내”에서 “영업 개시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방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는 한편, 그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법령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관리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徐秉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하는 3건의 법률안은 행정의 효율화와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먹는물 관리업무와 하수도 관리업무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환경행정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먹는 샘물의 개발 및 제조·판매업 허가와 사후감독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먹는 샘물의 제조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샘물의 개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샘물개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사의 주요기능을 종전의 폐기물 수거·공급 등 단순 집행기능 중심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기능 중심으로 확대·전환하고, 둘째 공사의 기능조정에 맞추어 공사 명칭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과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며, 셋째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감사의 임기를 다른 정부산하기관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하여 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인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하수도 업무의 집행효율을 제고하고, 둘째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댐건설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고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안이 먹는물 관리업무와 하수도 관리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행정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8항 등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河鍾範**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 외 12건의 환경부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 중에 제안설명이 된 법률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각종 지침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법안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동 법안과 같은 건설폐기물 통합법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정안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모든 건설공사 시 폐기물처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분리발주 시 발주자에게 배출자책임을 지도하도록 하며 현장 재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촉진에 저해요인으로도 될 수 있는 바 일정한 경우 분리발주의 범위를 한정하고 현장 재활용을 허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 중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확대하며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를 제조하는 개인인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8개 먹는물 관련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 중에서 먹는샘물 관련 검사기관의 지정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의 입법은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과 환경보전에 있어서 환경교육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나 교육부 소관업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기금설치는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법안심의 시에 관련부처 간의 이견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먼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감독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오염토양개선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 전문기관을 시·도지사가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정기관의 경우에는 타당하다 하겠으나 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리비용의 부담문제와 책임있는 감리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하시설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무부과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대상을 '지하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감사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법명 및 공사명칭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설립목적은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구축에 기여함'으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정책의 기초,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라는 개념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 중 도시기본계획 등에 변경이 있을 시 하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의무화하고

배수설비 전문시공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할 경우 일부 개발욕구가 큰 광역지자체의 경우 시설과다용량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徐秉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徐秉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3건의 환경부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宋勳錫**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

오늘은 회의시작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상정한 법률안과 지난 2월 임시국회 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만 듣고 대체토론을 하지 못하였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도 함께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에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틀 전 업무보고 시 정책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법안내용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도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주로 하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질의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씩 드리고 일괄질의의 경우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먼저 李正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 법률이 제정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 정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법 중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리고 이 법률안 부칙 제2조3항, 4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기이 반영된 사항으로 동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맞습니다.

○**金樂冀 委員** 또 개정안 15조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요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건설공사 관련 조달청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공동 계약을 하도록 해서 시공사와 설계사가 주체가 되고 폐기물 업체는 종속 관계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분리발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분리발주가 관리체계의 이원화, 행정력 낭비, 비효율적인 공사 추진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청계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리발주 제도는 계속 존치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樂冀 委員** 법률로 분리발주를 정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정부가 조사하고 규제를 해서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발주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알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다음은 정부가 발의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1년 11월 2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먹는물 제조업 등과 관련된 4개 분야, 38개 업무를 국가 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인데 동일한 내용을 99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맞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 문제로 부결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현재는 시도에 위임해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사실 샘물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업무는 지금과 같이 국가사무로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분별한 샘물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시도에 완전 이양할 경우에는 허가 남용 등으로 지하수 변동과 예기치 못한 사고가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것을 개발할 때 환경영향조사서를 국가 사무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으면서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샘물 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지하수 고갈과 국민 위생 등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溪輪 委員** 장관님, 제 생각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金樂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답하는 가운데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서 38개 먹는 샘물 관련 국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34개는 위임사무이고 4개는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따져 보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양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지방화시대에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옳으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의 어떤 특정한 업무는 중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구시에서 지하철공사를 운영해야 될까, 왜 국가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낼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 사고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계획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지방 지하철 운영에 연결된다고 해서 무엇이 나쁜가, 반드시 분리시켜서 지방에 주어야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지금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정한 이런 업무는 이양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金樂冀 위원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해서 결정했는지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 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 겠고, 이와 관련된 것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아 까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시·도지사한테 이양 하는 것이 나와요.

하수처리장 설치인가업무를 시·도지사한테 이양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이양을 결정했는지 그 근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분권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으로 보면 지방 분권화가 발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

단에는 이렇게 수질검사기관 지정이나 관리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어도 결국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申溪輪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양을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이양하는 것이 좋지요. 그게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개념인데, 이양할 것은 이양을 안 하고 이양을 안 할 것을 이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앙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양하면 규제가 완화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든가 무슨 이익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폭 이양해야 되지만 국가정책으로 통일된 규격과 기준을 가지고 규제할 것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내가 개발한다, 내가 감독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방이양위원회가 결정한 근거가 제가 말한 것 외에 더 특별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같이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도 위원님의 기본적인 입장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식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가사무로 이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방 분권화와 맞물리면서 어떤 부분이 갈 수 있고 없느냐 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申溪輪 委員** 장관님을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 보시고…… 지방 이양이 필요한 분야는 왜 지방 이양이 되어야 더 유익한가, 또 지방 이양이 안 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노동 쪽에 그런 것이 있고요. 노동, 보건, 환경 이런 부분은 지방 이양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지방 이양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알겠습니다.

○**申溪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勳錫 申溪輪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秉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徐秉洙 委員 먼저 金元吉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가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고 복잡다양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 제정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조치 의무화와 무과실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와 발생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법에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무과실책임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당해 사업 활동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만 증명할 경우에 가해 사업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입법취지는 좋지만 현재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일반적인 입증과 개연성 정도의 입증과의 구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동의합니다.

○徐秉洙 委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위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보험의 도입은 각종 환경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초래할 환경오염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경감시키고 보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도입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상청구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되고, 면책조항의 구체화, 배상한도액 설정 등이 있어야 하며 또 국가 기금도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준비를 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측면과 관련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기금설정 문제는 재원마련 하는데 다른 부처하고 상당히 어려운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徐秉洙 委員 저도 이 법안 제안의 의미와 취지는 대단히 좋고 빨리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입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徐秉洙 委員 다음, 李相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평가법중개정법률안은 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미달에도 유사한 개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부 시·도에서 조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환경부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그냥 맡겨 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환경부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조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관계부처 협의가 없으면 되기가 어려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徐秉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 관한 법률과 李正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등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내용이 비슷하고 또 李富榮 의원께서 하신 것이 李正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아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서 아까 존경하는 申溪輪 위원께서는 지방이양이 바람직하지만 철도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특히 지하철이나 소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관장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

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물관리법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업무 자체가 소규모로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판단이 좀 안 서는데요. 일단 샘물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조사서를 국가사무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徐秉洙 委員**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미 지방 정부에 위임되어서 하고 있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徐秉洙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먹는 물관리법에 관해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기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5조에 감사위원 지정업무를 전국적인 통일성, 일관성, 신뢰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徐秉洙 委員** 그러나 기왕 지방이양의 취지를 살리자면 시행령 제31조에 감사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한다면 이것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위에서 좀더 정교하게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徐秉洙 委員** 또 제28조제3호 수질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에 샘물개발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민원을 공공의 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먹는샘물 제조판매 인허가 때 민원해결을 전제로 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위반시에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의 견해는 어

떻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일단 먹는 샘물을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수돗물과 관련된 간이상수도 개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먹는 물과 관련된 용도로 엄격히 규제를 한다면 원래 취지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넣었습니다.

○**徐秉洙 委員** 그런데 주민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처음에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질 개선을 위한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데모를 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해주다 보면 수질개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지원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열어놓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그 부분은 한정해서 못을 막아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徐秉洙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李正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교육진흥법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이 취지나 방향은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현재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부나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徐秉洙 委員**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환경부 자체는 물론 관련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 후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시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다음에 또 **李正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인데 이것도 토양오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되나 내용에 있어서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오염검사 결과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업무 범위의 상충 우려가 있고 또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신뢰성 확보 등도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밖에 감리의 효율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오염도양개선사업의 감리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도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소지도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개선사업의 감리와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정보완한 뒤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저희들 판단은 일단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 관련 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감독은 이미 그 안에 다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기능을 다른 기관에 부여하는 경우에 특별한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徐秉洙 委員** 그다음에 朴是均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생태통로가 38개에 불과하고 개발사업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개설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설치의무자의 규정을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단절 또는 훼손시키는 개발사업자로 제한을 두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徐秉洙 委員** 그다음에 金樂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도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하생활공간의 환기 및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대구지하철사고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감안해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지하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에서 지하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이며 교육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도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반드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 대상의 각종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지하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괜히 규제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에 반드시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책임 있는 자에게 아예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徐秉洙 委員** 마지막으로 정부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폐기물의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에 맞추고자 공사의 명칭과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설립목적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하는 것은 성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들에게 환경자원을 아껴쓰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저희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여러 가지를 놓고 골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徐秉洙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徐秉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德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德圭 委員** 질의라기보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오늘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서 제기된 문제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또한 똑같은 입장에서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말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申溪輪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에다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것을 실적주의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 한 건 줄속으로 지방에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특히 본 건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보게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무화는 그간 다른 공공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위원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 등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계획대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는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서 하수관을 통해 종말처리장 아니면 배수펌프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金德圭 委員 이 하수관거의 용량이 크게 이루어져야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악취제거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에 위임해서 그 용량을 크게 만들어 놓은들 그 보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댐 상류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해서 댐 담수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어서 중앙정부에서 생각한 대로, 탁상논리대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는 점을 전제로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특히히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용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법률개정안에 시·도지사가 이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할 때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그리고 사용에 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인가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여정부가 올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방이양금과 보조금 같은 것을 통합해서 지자체에게 총량 개념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예산을 바꾼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넘비시설이라든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피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몇 %는 반드시 한다는 어떤 조항을 못 박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긴장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德圭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면은 이 경우를 예로 들면 됩니다.

중랑천이 오염되고 있어요.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잉어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철새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철새들이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장안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에서 걸러 나오는 물은 오염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상류지방, 의정부 쪽 경기도 쪽에서 종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원구나 중랑구, 동대문, 장안동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중랑천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제대로 종말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점점 오염되어서 내려오다가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래서 이것은 필요하지만 보완대책

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金德圭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 委員 벌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먹는물관리법중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환경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먹는 물의 경우에 샘물, 지하수를 개발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일터인데 아마도 산 좋고 물 좋은 심산유곡이 취수를 하는 지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많지 않은 아주 오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될 텐데 그런 지역일수록 세수 확보를 하는 데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별로 그렇게 변변한 사업체가 없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터이고 그러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 사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보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지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이 현명할지, 결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예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도 지방에서 위임사무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샘물을 개발할 때 환경영향조사서를 국가사무로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런데 그 장치가 실효성이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세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일정 정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형태의 관여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에 환경

영향조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저희가 일단은 이양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환경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吳世勳 委員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분의 20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걷고 있는데 법에 보면 절반 정도가 다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돌아가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吳世勳 委員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되는데 첫째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쓸 때 과연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적합한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개선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이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수질개선이라기보다는 주민피해로 인한 먹는 물과 관련된 피해, 딱히 수질개선만은……

○吳世勳 委員 기존의 법에서는 조항 자체가 수질검사하는 데도 쓰이고 수질개선부담금이 다시 쓰이는 용도가 제28조의2 1호에 보면 수질관리시책사업비로 되어 있고 2호에 수질검사시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3호를 추가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100분의 20을 걷어 가지고 이 두 가지 용도에 썼는데 두 가지 용도보다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공익사업이 아닌데, 그렇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吳世勳 委員 그런 경우라면 어차피 주민 간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아까 徐秉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걷는다는 이 효율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 같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吳世勳 委員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 2호보다는 오히려 3호에 쓰이는 비용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徐 위원님의 지적도 있

었습니다마는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에 흔히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지하수를 퍼 올리게 되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업이 번창하면 할수록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라든가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수량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연후에 사업의 인·허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을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오히려 합법화만 시켜 놓고 이것이 있으니까 다른 요구를 주민들이 하는 것에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큰 부분으로 나와서 두 가지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다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徐秉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에 대해서 제가 다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장관님께서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무과실책임……

○**吳世勳 委員** 무과실책임에 대해서지만 이 개연성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언뜻 듣기에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취지시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보험제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吳世勳 委員**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이 아까 무과실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표명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무슨 준비를 하시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環境部長官 韓明淑**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책임이나 반발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吳世勳 委員** 점점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물어지려면 어차피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가 기존의 법령과 판례에 의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를 법리에 비추어서 고민한 끝에 판결을 내림으로써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일방

적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집적된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미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비단 환경오염피해소송뿐만 아니라 의료과오소송이라든가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법률지식으로도 열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완책이 판례상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여러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법안화하는 정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가 측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소송이라고 하는 검증절차가 따로 있고 또 아시다시피 환경오염피해라는 것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곤란함을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무과실책임이라든지 입증책임을 전환이라든가 이런 법리들이 개발되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판례나 법에 의해서, 독일은 이미 환경책임법에 의해서 이런 법리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고민을 환노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다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이것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법사위 차원에서 법률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제가 아까 徐秉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법적체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이 법안 도입을 위해서 관련 업계의 기본적인 인식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험업계에서도 환경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

는데 환경피해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광범위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옳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하나 아직 여건 상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吳世勳 委員 그 용역을 했던 업체가 어디지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李圭用 한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홍규 교수팀에서 했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 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법체계의 정비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러니까 보험부분에 대해서 국한된 이야기지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李圭用 전반적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든지 인과관계, 연대책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법원판례나 개별 법규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되어서 발전되어 왔는데 다만 환경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액의 산정이라든가 보험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라든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吳世勳 委員 환경보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지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李圭用 예.

○吳世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법안심사소위를 하기 전에 보았으면 좋겠네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吳世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무과실책임주의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 31조1항과 토양환경보전법 23조, 광업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李圭用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확하게 환경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 하에 인정해 놓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법

원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은 선언적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이 규정도 선언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개 케이스별 판결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받기도 합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자체에 있는 규정을 실제적 규정으로 하는 데는 아직은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러면 판례하고 맞추어서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 수정안을 내놓아야지요. 자꾸 여기서 답변이 왔다갔다하면 내용이 이상해지잖아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李圭用 환경부의 기본입장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과실책임 원칙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徐秉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全在姬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吳世勳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등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수질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해 놓고 있는데 현재 부담금의 용도는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 수질검사 지원, 지하수 자원 보호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샘물 개발지역 주민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유가 샘물 개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주민을 지원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고, 일단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러면 주민 지원 사업에 쓰는 것이 부담금 징수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環境部企劃管理室長 李圭用 지금 40%·40%가 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환특회계로 들어가고 20%는 주민 지원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 취수로 인해서 생기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법 취지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이것을 확

대해석하고 또 자꾸 확대하는데 저는 이것이 징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행 법 제28조를 보면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샘물 개발업자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와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해당 샘물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그런 책무는 도외시한 채 샘물업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부가 대신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수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한 것이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동일 사업자의 누적평가규정을 시행령에서 법 조문으로 올리고, 2인 이상의 광물이나 골재채취 사업규모의 협의대상 규모가 되면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여부와 영향 최소의 대책을 조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원칙적으로 개정안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동일 영향권의 범위 설정, 선발 사업자의 기득권 침해, 행정적인 문제, 허가 행정 체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제한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기관이든 민간사업이든 상관없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이나 비용부담 주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朴仁相 委員** 개정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 대행자의 법적, 사회적 위상과 책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현재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이고 세부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평가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은 주로 생활환경 분야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은 이 분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인데, 자연환경 분야의 자격기준을 보면 토목·도시계획·지질·산림 등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는 동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분야의 자격제도를 포함한 자격기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23개 항목이 매체별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자격제도의 신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다만 환경평가사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다 능통한 만능적인 평가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에 대해서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어렵고 자격기준이나 직무범위, 효율성 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안의 평가사 제도와는 다른 대안을 내볼까 하는데요, 과학적인 모델링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평가를 하는 데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소위 모델링 등과 같은 평가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部長官 韓明淑** 하여튼 환경영향평가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대안을 내 주신 것은 대형 업체 자격요건에 모델링을 포함시키자는 것이지요?

○**朴仁相 委員** 예.

차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얘기해 보십시오.

○**環境部次官 郭決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중개정안은 저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徐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지요?

○**徐秉洙 議員** 예.

○**朴仁相 委員** 감량시설의 이론적 범주에는 실제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감량시설과 폐기물 발생 자체를 감량하는 생산공정설비가 포함되는 것인데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본 결과 폐기물처리공학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라 함은 발생한 폐기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조성을 바꾸는 행위를 말하고 법 제2조의 정의에서도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柳枝榮** 폐기물자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학적인 견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및 최종처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취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이지 않은 용어개념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체계에 혼란은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柳枝榮**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감량화시설의 의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상세하게 만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내일 법안소위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環境部廢棄物資源局長 柳枝榮** 알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赫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赫圭 委員**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계획의 변경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전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시도에서 원하는 대로 기본계획을 바꾸어주지도 못하고 설치인가도 못 해주는데 물을 깨끗이 하려면 하수종말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德圭 위원님께서 의정부 쪽에서 나쁜 물이 내려온다는데 하수처리를 안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대로 용량을 높여주든지 기본계획을 바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勳錫** 다음은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李仁基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으로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밀렵감시단 지원 및 운영,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사업, 국립생물보전관 건립 등으로 해서 2001년도에 약 40억, 2002년도에 약 50억, 2003년도에 약 150억 등의 예산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밀렵, 밀거래는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입니다. 현재 150명의 감시단원도 두고 있고 NGO와 네트워크 형성도 하는 등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밀렵행위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익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비책 때문에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법에서는 밀거래는 이익의 5배 내지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또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게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金樂冀 委員**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 동·식물에 대한 불법채취 포획 및 가공품의 취득, 취식 알선행위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李仁基 의원의 개정안은 자연상태의 균형유지와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방금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99년 5월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일원화하기 위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2001년 6월 21일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련부처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을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관련부처 중에서 재경부나 해양수산부나 문화관광부 등과는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야생식물의 보호와 관리는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지금이 2003년인데 그렇게 부처협의를 안 되면 정부발의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부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의원입법으로 해야지요.

자연환경 보전을 인간생활 영유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산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이 제도가 실효성 내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정부가 법안을 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의원입법으로 다시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열정이 덜 하다

고 보기 때문에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환경부가 노력을 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행되는 밀렵의 근절을 위해서 대국민 홍보와 단속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이것이 사실은 무엇이 잘못된가 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보신문화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데도 예산이 좀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밀렵, 밀거래와 국립공원 자연훼손에 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金樂冀 委員** 신고실적이 매년 10건 미만 같은데 밀렵신고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포상금은 3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제도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결과적으로 밀렵을 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신고도 안 하는 것이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야생 동·식물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26항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소위 시작 전인 4월 17일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勳錫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오세훈 의원 대표 발의)(홍사덕·남경필·윤경식·김홍신·김덕규·정병국·박상희·박인상·김성조·전재희·도종이·김부겸·권철·서병수·김병호·정범구·김용학·김문수·원희룡·이우재·김영춘·이성현·손희정·박인상·이인배 의원 발의)

28.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김락기 의원 대표 발의)(박인상·이재오·김만제·함석재·민봉기·오세훈·김성조·윤경식·박혁규·김정부·엄호성·윤두환·임진출·김기배·맹형규·김문수·황우여·박승국·이근진·서상섭·김용학·이승철·안영근·강창희·권기술·김찬우 의원 발의)

29.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 발의)(김성조 의원 외 3인 발의)

3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31.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산업재해보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조성준·정범구·이종걸·김홍신·이강래·이훈평·천용택·송석찬·김상현·김경천·정동채·남궁석·김태홍·김희선·박인상·신

기남·조한천·이호웅·김명섭·임종석·이미경·이재오·유재건·김택기·김화중·서상섭·최용규·김덕규·오세훈·김근태·김영환·김영진 의원 발의)

3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김락기 의원 대표 발의)(원희룡·이상희·김정숙·김성조·심규철·박종희·이인기·이방호·정병국·박혁규·임인배·윤두환·안영근·김학송·박원홍·이재창·김용학·임진출·서상섭·박재욱·이강두·이주영·김영춘·조정무·이승철·이성현·윤여준·김홍신·박세환·오세훈·박인상·박양수·최명현·이호웅 의원 발의)

35.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송석찬 의원 대표 발의)(최영희·문석호·설훈·김옥두·김근태·이강래·조재환·원유철·이재정·김덕규·이희규·최용규·장성원·유재규·박용호·정범구·이훈평·문희상·이근진·김희선·김태홍·박주선·전용학·안동선·장성민·임종석·이창복·김화중·이호웅 의원 발의)

36.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유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성순·이낙연·박양수·이윤수·박인상·남궁석·조재환·이용삼·윤철상·최재승·함승희·최명현·전갑길·이재오·조한천·조배숙·송영길·김화중·곽치영·김희선·전용학 의원 발의)

○委員長 宋勳錫 오전의 환경부소관 법률안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동부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吳世勳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金晟祚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李在禎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36항 정부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劉容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소관 심사대상 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7항까지 총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회의에 새로이 상정하는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의사일정 제32항까지의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은 지난 2월 임시국회시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과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제35항 내지 제37항 등 5건의 법률안을 포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27항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吳世勳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 議員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의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는 오히려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1986년 법 제정 당시 연소근로자의 미숙련 노동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 경영상의 손실을 보전하고 근로자 임금체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연소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동과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의 급증 속에서 연소근로가 성인 일반근로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등의 취업부문이 많아 동 조항이 존재할 필요성이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소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조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여 18세 미만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법률개정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이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보존과 인권침해 등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勳錫 吳世勳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락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議員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소득불평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는 법정 최저임금액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공익위원의 선임이 노동부장관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의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임금정책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 현행 최저임금액은 2001년도 3인 가구 실태생계비의 27%, 2002년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액이 전체 노동자임금 평균의 5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비율을 법으로 강제할 나라가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반대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객관화시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 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한의 적정비율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법정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동부장관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노사 당사자로부터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사단체의 합의방식에 의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 법률은 제5조제2항에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연소자 취업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숙련 형성에 걸리는 기간이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제시할 수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과도한 예외규정은 실효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동 법률은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해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업의 회계가 1월1일부터 시작되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분배정의가 실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金樂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해서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 수를 곱한 임금 총액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셋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도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법안 역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3개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正樹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요약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은 중복 부분이 있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첫째,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의 단서신설로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규정되게 되면 최저임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인상되어 저임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 우려,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5조제2항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은 연소자에게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동과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의 급증 속에서 연소근로자의 숙련형성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명백히 제시할 수

없다고 보며 나아가 18세 미만자의 생계비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더 낮거나 생산성이 낮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저임금제의 입법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안 제10조제2항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들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 9월에 임금을 조정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최저임금 인상분만큼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과 같이 적용시기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상승률이 임금교섭의 준거지표로 작용될 경우 노사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고,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근로자에 대한 임금교섭이 어느 정도 타결된 이후의 시점인 현행과 같은 적용시기에서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오직 노사단체에 대한 중립성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중립성이 요구되는바 동 개정법률안과 같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정지기간 상한선을 상위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안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2개 법률의 보험료 징수체계를 바탕으로 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되고 자진신고·납부체계에 불편을 겪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한이 “보험연도초일 7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일반 사업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용결산이 통상 3월 말에 이루어져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 또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집행의 원칙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 및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확정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처리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보험료의 자진 신고·납부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부 측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의 적정한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동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징수특례로 인하여 부과될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할 행정적 비능률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대상을 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안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포함하고, 또한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현재는 대행기관의 전용계좌에 납부하여 국고로 이체토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고계좌에 직접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확대한 것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한 공단의 업무경감 및 징수율을 제고시킴으로써 보험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험사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장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경정청구제도 및 수정신고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는 자진 신고한 보험료에 대한 수정·경정청구제도가 없어 사업주가 보험료 과다 신고·납부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또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현재 보험료에 대한 심사·재심사 등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며 국세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정청구제도 및 수정신고제도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 정비 및 보완 차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 징수의 사유가 민원인의 편익과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전제로 1년간의 보험료 징수체계를 1개월 단위로 납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법률안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04년 1월1일로 하고 있는데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이 촉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을 2005년 1월1일로 하여,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2개의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관계 성립·소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사무조합, 과대로 등 적용·징수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징수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법들과 통합징수법의 관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6건의 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吳世勳위원)선임의견

(15시08분)

○委員長 宋勳錫 李承哲 의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었던 李承哲 위원 대신에 吳世勳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吳世勳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노동부 소관 법률안 대체토론회 회의 시작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새로이 상정한 법률안과 지난 2월 임시국회 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만 듣고 대체토론을 하지 못하였던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의 법률안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3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도 국회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질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씩 드리기로 하고 일괄

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소위원회에 吳世勳 위원님께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통합징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시기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특례문제,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징수법안 중 납부시기 연장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납부시기가 현행은 연도 초부터 70일까지인데 이를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3월 30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3월 말경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 이후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기로는 결산보고 기일이 3월 말인 법인인 경우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지급 총액은 3월 중순경에는 확정된다고 하고 따라서 3월 말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이 결산보고 기일이니까 그보다 열흘 정도 더 뒤로 물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은 됩니다.

○朴仁相 委員 이것은 근본적으로 납부시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10일 정도 연장해서 4월 10일까지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朴仁相 委員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특례인데 이 사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임금이 얼마입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朴仁相 委員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본회의 때 임금 몰라가지고 한 번 당했잖아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랬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법률을 다룰 때는 옆에서도 도와주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124만 원인데 이 기준임금을 적용해서 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일괄 계산해서 부과가 되면 징수 자체는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임금보다 낮

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도 되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의신청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재산정을 받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朴仁相 委員** 이론상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임금이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의 평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업장은 이의신청 대상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수십만 개소의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고 결국 특례제도의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양해하시면 담당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勞動部 勞動保險審議官 金憲洙** 노동보험심의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물론 이것은 이론상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은 기준임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수지가 적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전체 수입과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용자의 손해가 분명히 예상되는데 현행 기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관은 기준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종별로 5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리입니다.

제정안 내용에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마는 시

행령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요건이 완화되면 보험사무조합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난립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단의 관리감독 능력이 솔직히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어제 吳世勳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 감사를 해 보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뒤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현재 시행령상의 보험사무소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는 산재보험법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법은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합징수법이 제정되면 이것 역시 통일되어야 하는데 노동부는 현재 100인과 300인 중 어느 기준에 맞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300인 이하로 통일을 하고 다만……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00인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사업장 자체에 보험사무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보험사무조합은 자체 보험사무능력이 없고 규모가 작아서 공단의 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곳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검토를 더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국가가 징수비를 주는 것은 300인 미만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대행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일정하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는 100인 이상이라면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차라리 도와주려면 사무소 개설은 100인 미만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樂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 인상을 계속해 왔지만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올라왔는데도 나아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근로자의 50%로 할 경우에 지금 당장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마 이것에 대비해서 전체 임금의 50%를 끌어올린다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안대로 통과하되 부칙에 몇 년 정도의 경과조치를 두면서 상승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저는 김 위원의 안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해서 한꺼번에 끌어올려버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사용자들도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선 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吳世勳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이 두 개인데, 두 개정안 모두 가사노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朴仁相 委員** 지금 양대 노총, 경총과 함께 저 임금 근로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노동부 담당관 나와 보세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근로기준국장 송영중입니다.

○**朴仁相 委員** 최저임금법 널 계획을 하고 있어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朴仁相 委員** 실태조사 내용 중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습니까, 없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그것은 안 들어 있는데요. 지금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지금까지는 없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없습니다.

○**朴仁相 委員** 제가 지적을 하니깐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예.

○**朴仁相 委員** 그래서 가사사용인의 고용실태에 관해서 기존에 조사된 자료도 없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예, 없습니다.

○**朴仁相 委員** 파출부, 개인 운전수, 정원사, 가사사용인들은 고용의 형태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근기법상의 근로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 일급, 월급, 이렇게 액수로 결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배제되어야 할 현실적인 이유는 없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그 문제가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朴仁相 委員**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물론 그렇습니다. 마는 법률체계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최저임금의 적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가내근로직업을 우선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宋永重**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지금 미국의 경우에 공정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가사노동자로서 총 8시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관 아시지요?

○**勞動部次官 郭決鎬** 미국하고 ILO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일본은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가내노동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이라고 한다면 이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적용확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다음은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현 정부 들어와서 15일 첫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업무보

고를 못 받았고 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장관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李在禎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93년도부터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상실하고 말았고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는 물론이고 불법 체류자의 합리적 해결과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 축소나 근로조건 악화 등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영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부담가중 문제는 이미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국내노동자들의 임금이 국내노동자들의 83%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2%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상정 법안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안에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金樂冀 委員** 또 법안 제3조에 보면 외국인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외국인력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이나 업종별 도입규모 등 주요사항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력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이미 정부 내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樂冀 委員** 좋습니다.

법안 제6조에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관련하여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근로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송출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구직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이 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李在禎 의원 안에 좀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법안 제7조제2항에 보면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동의하고요. 1년 단위로 3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金樂冀 委員** 또 법안 15조에 사업장 변경의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유린이나 노동착취 등은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아직 직장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노동허가제의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동이 허용되는 방식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법안 부칙 제2조1항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외국인에 대하여 이 법률에 준하는 취업알선 절차를 거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14만 9000명에 대해서 3월말까지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가 다시 8월말로 연기한 사실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고용허가제가 올 상반기에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려면 내년 하반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겠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렇다면 정부 방침대로 8월 말에 불법 체류자 전원에 대해 출국 조치할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만약 출국기한을 연기할 경우 정부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바로 그 점 때문에라도 고용허가제 법이 하루빨리 입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지금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로서 이 불법 체류자 전원을 출국시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단계적으로 체류기간에 따라서 출국을 유도하는 방법 등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樂冀 委員** 법안 부칙 제3조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연수생 제도는 실질적으로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취업활동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생 송출과 관련된 비리가 이미 중개업의 통제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안과 같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 그

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을 해소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 법안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金樂冀 委員** 끝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 축소나 근로조건 악화, 외국인력의 정주화, 불법 체류자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宋勳錫 위원장, 朴赫圭 간사와 사회교대)

○**勞動部長官 權奇洪** 내국인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안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를 한 달 이상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의 보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주화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1년 단위 3년 기한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주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충분치 않았고 공급이 거의 합법적으로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본다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불법 체류자 문제는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모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 축소, 근로조건 악화, 정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예상이나 추정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을 적에 있을 수 있는 국내 근로자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樂冀 委員** 다음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

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赫圭 金樂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 委員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낸 정책자료집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에 제 입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李在禎 의원안으로 나온 이대로 입법될 때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일소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자신 있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모든 왜곡되어 있는 제도의 결과가 일단 송출국에서 송출할 때 송출비리 문제로 부터 비롯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 委員 말하자면 본국 화폐가치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모든 왜곡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법안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송출국의 송출비리문제를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李在禎 의원님의 법안 자체에는 그런 관리부분이 대폭 생략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金樂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李在禎 의원님의 안에 관리부분을 중심으로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국가기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吳世勳 委員 이른바 MOU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만 나와 있어요. MOU를 체결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MOU의 내용이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력 송출국 중 국가적인 차원에서 송출비리가 저질러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권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가족들이 송출회사를 장악해서 굉장히 큰 이권사업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또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일단 고용허가제 도입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권사업화 되어 있고 또 송출국의 공공기관이 될지 개인사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관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누려오던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연수생 제도를 취하든 고용허가제를 취하든 노동허가제를 취하든 결국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가 일단 전제되어야 지금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를 지금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선뜻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위에 넘겨서 의논해 봅시다 하지 못하는 이유도 지금 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에 써 있는 것 이상의 말씀은 안하고 계시거든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혹시 담당국장이 조금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吳世勳 委員 예.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고용정책심의관 하갑래입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MOU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민간중개인이 개입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연수생들은 민간중개인이 개입되게 되어 있고 또 합법적으로 얼마를 받아라, 2000불까지 받아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민간중개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장·차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긴다면 우리의 노동부 조직을 통해서 노동부 조직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어떤 식이나 하면 외국인 희망자가 들어올 때 딱 지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시스템은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희망자 풀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희망자들은 우리나라 고용안정보로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므로 미리 갈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출비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제도 안에 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자를 뽑을 때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기준만 제시하기 때문에 송출기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출비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송출 주체에 대해서 보면 MOU 체결로 송출기관의 역할을 송출국의 공공기관으로 대체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적지 않은 송출국의 송출비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될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관리들의 말을 믿고 해 보자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절박한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송출국의 MOU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사전에 고민하고 논의되어서 그 실현 여부와 외교적인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

이런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악의적으로 본다면 일단 급한 대로 MOU에 포괄위임을 해 놓고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송출국에서의 근로자 선정방법에 관해서 보면 노동부는 선정방법의 한 과정으로 한국어시험을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勞働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런데 한국어시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기준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요?

○勞働部長官 權奇洪 예.

○吳世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부가 생각하는 한국어시험은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송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송출비리를 해소·억제하는 기능은 힘들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그나마 자질개선의 효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한국어시험은 자칫 통과외 정도로 전략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노동부 안 중에 한국어시험은 송출비리의 해소·억제 방법이라기보다는 비용추가로 인한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서 역기능을 할 우려도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설명자료에서 노동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가 고용허가제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의 변동, 특히 한국어시험과 외국인 근로자 명단 풀 작성 과정에 있어서 사전준비기간 혹은 유예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 풀을 형성하는 절차로서의 한국어시험을 객관적으로 치러 내기에 아직까지는 송출국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02년 6월에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미 경험해서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도기에 생기는 혼란으로 인해서 인력수급 및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결국 고용허가제는 시행 초기부터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하여서 장관이 일정 부분 동의하시겠지요?

○勞働部長官 權奇洪 지금 뭇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우

려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吳世勳 委員 극단적인 상황이 될지,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 될지 그것은 좀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 같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생각해 낸 방법을 대안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부여를 위해서 한국어시험을 실시하되 난이도 별로 절차상의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입국자격을 차등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몇 등급으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 한국어시험 합격자에게는 우선입국과 취업기회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한다, 상당히 고득점자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입국된다, 취업이 보장된다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과외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2급 한국어시험 합격자에게는 예를 들자면 일정기간,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이 기간 내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체력시험이나 특수자격 혹은 기술자격 소유자에게는 1급에 준하는 우대를 한다든지 하는 상대적 우대입국 및 취업기회를 주는 방안, 그리고 3급 한국어시험 합격자에게는 기본자격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시험의 위 급수에 합격하면 당연히 위 급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자격만 주어서 언제 입국대상자로 분류될지 모르는, 말하자면 지금 노동부에서 구상하는 그 정도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일단 돈 들어가는 것을 한국어시험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시험 공부를 하는 풍토도 조성되고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면서 송출비리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확실한 보장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급수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동일 시험의 성적결과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나라에 4년제 한국어학과가 있는 경우에 그 졸업자 및 국가공인 한글학교 수료자의 경우에는 한국어시험 합격에 상응하는 우대조치를 준다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험의 경우에는 모집시기와는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급조모집에 따른 시험부정이나 비리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토플시험 같은 형태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한국어시험 성적순위 결과에 따라서 입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송출비리 차단효과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송출국에 한국어 보급이라는 부수효과도 이룰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의 서경석 목사님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해 본 것인데 이런 방법을 취해도 워낙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송출비리문제를 100% 근절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어시험이라는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면 일정 부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權奇洪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李在禎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에만 의존한다면 불법 체류자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지요?

○勞働部長官 權奇洪 100% 근절 차원이라면 보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이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출국만기보험 신탁가입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귀국비용보험 내지는 신탁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근로조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서 이런 방법이 일단 연계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자율을 우대해 주는 출국만기정기적금의 의무적 가입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임금의 2, 30% 정도를 강제적금시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勞働部長官 權奇洪 이미 李在禎 의원님 안 자체에도 귀국보증보험이나 출국만기보험 신탁가입 등은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입니다.

○吳世勳 委員 출국만기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

해서 논의해 본 바가 있나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론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吳世勳 委員** 내부적인 토론과정 정도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소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확실하게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국보증보험 그 이상으로 꼭 제한을 해야만 할까 생각합니다. 귀국보증보험 정도, 출국만기보험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吳世勳 委員** 건전한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본국의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송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출국만기정기적금은 강제징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극복한다면 이들에게 금융혜택을 줌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한편 현금 소지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불법이탈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출 본국에서의 인적 담보 내지 부동산 담보를 통해서 불법체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MOU 체결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불법체류화 되는 문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구상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먼저 한국어 시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석 목사님은 한국어 시험을 하자고 하시는데 도요안 신부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어 시험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 독일에 간호부, 광산 근로자를 보낼

때도 독일어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합격을 시킨 다음에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어 시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시행하게 되면 대리시험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시험비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안전한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어 시험이 선발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보되 그것은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지금 한국어 인증시험이 있는데 그 제도를 발전시켜서 한국어 시험의 장기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올립니다.

○**吳世勳 委員** 제가 한국어 시험을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은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꼭 한국어 시험을 전제조건으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우수한 송출비리 근절책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 쪽으로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사업화되어 있는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력 송출사업으로 얻는 외화수입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국어 시험을 반대하는 논거가 바로 시험비리 때문이라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어 시험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朴赫圭 간사, 宋勳錫 위원장과 사회교대)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시험이나 시험을 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吳世勳 委員**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사람을 내보내서 버는 돈의 비중이 그 나라 국가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부분이 국가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면 나라에 따라서는 충분히 관철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그 일에 기죽지 말고 냉정한 전제를 토대로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저희가 검토한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되고 그 사람들은……

○吳世勳 委員 조선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차등화해야지요.

○勞働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어 시험은 나중에는 필요하지만 내년 7월에 도입하면서 바로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고 송출비리를 일으킬 확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서 중기적으로 2, 3년 지내면서 체제를 갖추고 나서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송출비리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勞働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문제의 객관성, 시험문제의 유출, 대리시험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그 나라에서 관리하게 하면 점수조작이나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부터 바로 탈락시키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빠르지 않느냐 보고, 2~3년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어인증시험 제도를 발전시킨다거나 시스템이 된 다음에 탈락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출국만기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만기보험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근로기준법에 특례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강제저축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으로 넣으면 되지만 특별법에 법에 예외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관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이 되고 있는 것이 80%인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불법요인은 합법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여기서 사람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불법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합법의 길을 터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나라에는 불법체류가 1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해소되지만 그래도 그때 생기는 10% 미만의 불법체류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체류자 위주로 잡아낼 것이 아니고 사업장 위주로 감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주로 한다면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잡아 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28~29만 명씩 되는 사람들을 감독관들이 들어가서 잡아내기도 어렵고 일단 8월까지 유예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제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그쪽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잡아서 불법체류를 근절시키는 식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정부가 의지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3D 업종이라는 것이 가내수공업 형태를 취하는, 말하자면 근로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힘든 영역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의지만 가지고 그것을 믿어 달라,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 할 것이냐, 그래서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지금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 법의 도입이 국회에서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의지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MOU 체결도 아마 우리 뜻대로 될 것이다, 또 불법체류화 되는 문제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될 것이다, 지금 상당부분 그런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상임위원들조차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수준이면 본회의 통과 안 돼요.

○勞働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OU체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

니다. 저희들은 MOU를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에서 불법체류가 생긴다거나 송출비리가 생기면 그 나라에 가는 쿼터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게 심할 때는 MOU를 파기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불법체류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의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도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DB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명단이 확실하게 확보된 DB를 가지고 그 DB를 우리 근로감독과로 넘기면 근로감독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워치(watch)를 해 나갈 예정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외국인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근로감독관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입국 단속직원들도 180명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가시고 할 때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 노동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좋습니다.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들인 것 같은데, 어느 소기업체 사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오신 서신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외국근로자의 인권문제는 불법 체류자 때문이며 불법 체류자는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관리해서 양산된 것입니다. 적당히 사면 또는 체류허용연장 사면으로 이제는 못된 한국 사장들이 외국근로자 빼 내가면 외국인 근로자는 도망가는데 아무런 애로를 느끼지 않으며 그래서 불법이라는 족쇄로 비인권적 처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분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불법체류 해소방법을 찾는 정부, 특히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민국 같은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출입국관리소의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혹은 불법 체류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둔다든지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중개업자,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엄중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관광비자로 입국했던 노동인력유입정책에 의해 입국했던 불법 체류자는 대한민국에 받을 붙이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환경을 우리 스스로 수립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은 노동부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勞働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 委員 최근에 제 홈페이지에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우려의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허가제 찬성론자로 분류되어서 알려지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올려 주시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국민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막연히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의지를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홍보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고용허가제라는 총론만으로 기존의 모든 노선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론 차원에서 기존의 문제와 병폐를 해소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된 연후에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경영상의 치명적 불이익이 가지 않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된 연후에 고용허가제는 비로소 외국인력정책의 대안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차 거론하지만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도 못한,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그런 방안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본 위원이 이제껏 제기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기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서 노동부는 좀더 진지하고 성실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在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 委員 상정된 법률이 많아서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대체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劉容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당위성만 가지고 재소자에 대한 훈련시설이나 비용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어도 법에 있는 만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은 심의가 가능합니다.

국가는 일반회계에의 전입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재소자훈련과 또 보험료 부담주체가 아닌 직업훈련공익법인에게 고용보험금으로 훈련·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서면으로 앞으로 일반회계를 확보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저에게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吳世勳 의원님이 발의하신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제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金樂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네 가지인데 한 조항은 吳世勳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찬동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선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찬동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영향률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뽑아 본 자료에 의하면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정해졌던 최저임금 영향률이 2.8%였는데 만약에 金樂冀 의원님의 안대로 하면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영향률이 5.2%, 전체 근로자의 기준으로 영향률이 20.1%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께서는 우리 金樂冀 의원님의 취지도 살리고 기업도 감내할 수 있는 영향률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다시 산정해서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법률안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 적용기한을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렇게 되었다가 최저임금 결정률이 익년도 임금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기를 적용했는데 이것을 다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옮겼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해소되었는지 하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金樂冀 의원님의 의견대로 공익위원을 선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좋은지 하는 것도 노동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晟祚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은 저는 원칙적으로 찬동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21조5항에 보면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례보험료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 사업장을 그렇게 하면 업무가 얼마나 간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찬동하는데, 만약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모든 것을 다 재산정하게 한다면 이 도입의 원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양해하시면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노동보험심의관 김훈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금이나 사업규모를 검토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근본 뜻은 사업주 신청이 있어서 재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의 신청이 없더라도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해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全在姬 委員**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모든 것을 다 재산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열된다면 특례보험료의 도입취지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全在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정적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노동부로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경우만은 재산정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법안 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다음에 제33조제1항에 보면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全在姬 委員** 현재 개정된 현행 법률로 보험사무조합에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이고 고용보험은 200인 미만입니다.

○**全在姬 委員** 앞으로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까, 조정하려고 합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지금 300인 미만으로 통일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는 현재 100인으로 되어 있는데 50인 미만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인에서 300인 사이는 사업주가 필요에 의해서 보험관리를 위탁하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全在姬 委員** 사업주가 위탁하는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주고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이 조항과 관련되어서 이 법률안을 입법고시했을 때 반대하는 기관이 있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보험사무조합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저희 의원실에는 반대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왜 정부에는 안 들어왔지요?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저희들이 노사단체에도 의견을 보냈고 또 입법예고도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접수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지금 제가 알기는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에 대해서 경기경영자총협회 또 일부 보험사무조합을 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어떻게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규모에 대해서 ……

○**全在姬 委員** 규모가 아니고 이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공공단체를 넘어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것이라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의 제기가 있으면 그 반론의 제기에 대해서 노동부는 충분히 검토해서 법률안 심의 전에 충분한 법률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全在姬 委員**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원수급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도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게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통합징수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요?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이 부분에도 역시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쪽의 견해와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全在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동부의 확신있는 답변을 법률안 심의 전에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動保險審議官 金薰洙** 예, 알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제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이 자리에서 받으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서면답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이번에 다루는 법률 중에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크게 몇 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체류자는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없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극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송출비리를 없앨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와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전혀 이의 없습니다.

○**全在姬 委員** 작년도 노동부 국정감사 때의 장관 답변을 인용해 보면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노동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인지 병행 도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全在姬 委員**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정부 발표가 거의 공수표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완전히 신뢰성을 잃었는데 이것을 질의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15분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넘기고 서면답변을 받아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가 안 되니까 고용허가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작년에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셨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 委員** 취업관리 제도를 도입했는데 노동부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못했어. 대단히 부진합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그런데 노동부가 취업관리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인턴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의욕이 앞서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리고 계획은 참

보기 좋았는데 해 보면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란 경험 많아 가지고 지금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대단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취업관리제처럼 또 부실한 측면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까 吳世勳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자신 있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고 진지하게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시행착오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질의는 서면으로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세계 인권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이상 이렇게 불법상태에서 근로자로 쓸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선뜻 ‘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너무나 가중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고용허가제 관련해서 실무국장을 몇 번 저희 방으로 초대해서 이른바 인건비 부담 상승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무자는 아주 자신 있게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실제 현장 중소기업과 우리 실무국장과의 대화 자리를 내일 주선해 놓았습니다. 미흡하지만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거기에서 분명히 풀리지 않고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막대한 어려움을 준다면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인건비 부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으신 것 같

기는 하나 인건비가 어제보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려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실제 현재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제만 해도 상당수가 고용 허가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비교적 양호한 형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불법 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영세업체들과 이해관계에 일정한 상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全在姬 委員** 제가 사실은 하나하나를 충분히 대체토론하려면 장관님하고 세 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는 존경하는 宋勳錫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률에도 그런 취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宋勳錫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견과 자세한 자료를 법률안 심의 전에 저희 위원회에 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우리 全在姬 위원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질의를 하는 지혜를 발휘해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면답변이 구두답변보다 내용은 충실합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德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 委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작년 6월에 결정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275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德圭 委員**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없습니다.

○**金德圭 委員** 작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노동계에서 다소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결정된 최저임금인 5인 이상 사업장 전 산업근로자의 2002년 예상 정액임금 136만 7322원의 37.6%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런 내용을 수정해서 법정 최저임금액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을 것인데 별다른 범위규정 없이 일괄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를 하한선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金樂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뜻은 저도 동의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평균 임금의 50%로 하게 되면 그 기준이 평균 임금의 90%를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전체 평균 임금을 뺀 몇 %라고 하한선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德圭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항에서 하한선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로 정하느냐의 방안을 검토한 후에 최저임금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신중한 검토가 있는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德圭 委員** 두 번째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금액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현재의 최저임금은 제5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련 단순노동이 대부분인 아르바이

트를 주로 하는 연소근로자들의 특성상 업무숙련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 6개월의 제한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연소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본 개정법률안 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 자체만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장애인, 양성훈련생 등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문제가 이를 계기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도 같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金德圭 委員** 세 번째로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한 조항인데 현행법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사정 합의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문제는 노사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해소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사 양측의 검토 없이 노동부장관이 임의로 임명해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노사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하듯이 노사단체 대표들이 각각 추천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사대표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조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만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공익위원의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다만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노사 양쪽이 추천하고 또 노사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공익위원들이 친노와 친사로 너무 명백하게 갈라질 위험성은 없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노사 양쪽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청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

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노동부장관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노동부장관이 제청자의 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노사 양쪽이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일종의 배척자 리스트를 빼고 나머지 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익위원까지 지나치게 친노 위원과 친사 위원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德圭 委員**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지를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환노위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질의를 심도있게 하였고 오늘은 그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장! 내일 공청회 끝나고 나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委員長 宋勳錫** 예.

○**金德圭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밀입국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산업화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서 불법체류를 해 가지고 돈을 번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부터 30년 전쯤인가요, 일본에 체재하면서 근로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근로했다는 당시의 우리 근로자들은 일본에서 갖은 수모를 당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형국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발생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다 느끼겠습니까마는 변두리에도 지하실에 조그마한 공장이 있어서 하청업자들 중에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밤에는 상당히 활보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불법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져요. 밝은 햇빛을 받으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나라에도 떳떳하게 왕래할 수 있는 권익을 보호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밤에만 나타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법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에관한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권국가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채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내일 공청회를 갖고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뜻을 전하면서 이 심사는 다른 기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金德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秉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秉洙 委員 저도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률제정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에 보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고용허가제가 발동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불법 체류자가 더 득을 보는 그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徐秉洙 委員 부칙 2조와 4조를 한번 보십시오.

2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보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구직·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조기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지금 제2조는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徐秉洙 委員 만일 외국인고용허가법이 된다고 한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1년 플러스 2년 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예, 국무조정실에게 부처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그러나 제4조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체류자격만료일까지만 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예,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그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19조 2항, 19조 3항은 산업연수생 체류비자 관련이거든요. 체류기간을 받은 다음에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徐秉洙 委員 그렇지요. 고용허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서 우리 국내에 있을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있을 수 있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그런데 그 이후에 1년만 지나면 바로 연수취업자로 해서 정식 취업자격을 받아서 신분이……

○徐秉洙 委員 연수취업자든 산업연수생이든 지금 현재도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1 플러스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예, 그렇습니다.

○徐秉洙 委員 고용허가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불법 취업자는 그 시점부터 3년이면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은 원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던 기간 동안만 취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개정되어야 되겠지요?

○勞動部雇傭政策審議官 河甲來 국무조정실에서 합의된 내용이 불법 체류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간 산업연수생이 합법적으로 근무한다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徐秉洙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인권탄압과 임금체불은 마땅히 바로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탄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도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연수취업자

는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 인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권탄압과 임금체불이 가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노동부가 고시한 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 제8조에 의해서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생의 신분만으로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보다도 더한 보호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인권탄압의 사례로 제시되는 강제근로, 폭행,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산업연수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또는 사실상의 근로자이면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탄압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일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秉洙 委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탄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3D업종에 한해 취업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3D업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본적으로 저임금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3D업종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근로감독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노동부가 고시한 지침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部長官 權奇洪** 예.

○**徐秉洙 委員**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된 내역이 있습니까? 2월17일 특별감독을 실시했다는데 무언

가 사례를 발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그 조치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취합이 덜 되어 있다고 합니다.

○**徐秉洙 委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37만 명 됩니다.

그렇지요?

○**노동部長官 權奇洪** 예.

○**徐秉洙 委員** 고용허가제가 만일에 통과된다면 이들 대부분이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에 난 칼럼을 한번 보셨습니까?

독일의 경우에 고용허가제를 실시했다가 외국인 정주화 문제라든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 내국인 실업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충돌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노동部長官 權奇洪** 오늘 문화일보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터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徐秉洙 委員** 이와 같이 4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토록 한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3년 시한으로 있게 되고 가족동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주화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徐秉洙 委員** 장관님 말씀대로 가족동반을 금지하고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9명 중 절반이 넘는 52.9%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불법 체류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합법화가 되면 관리의 대상이 되니까요.

○**徐秉洙 委員** 어쨌든 이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자녀를 동반한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장관님의 말씀대로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조선족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족이라든가 우리 동포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엄격히 분리해서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는 가족 단위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의외로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 신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한 불법거주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아직 법무부 당국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徐秉洙 委員** 어쨌든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고용허가 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시키기에 앞서서 좀 더 세밀한 정주화 방안을 위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 제도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權奇洪**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국인 근로자를 한 달 이상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가진 기업만이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徐秉洙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노동부 직업안정센터에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센터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徐秉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서비스 분야 취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徐秉洙 委員** 이 서비스 분야 취업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노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徐秉洙 委員** 그런데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관리 제도는 2002년 12월9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얻고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648명이며 이 중 237명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12월 9일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구인을 신청한 사업체는 49개 업체이며 이들이 신청한 인원은 125명입니다. 현재 체결된 계약건수는 25건입니다.

구직등록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10.5%, 구인등록자 기준으로 볼 때에는 20%에 불과합니다.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秉洙 委員** 물론 계약체결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그저 사용자의 구인등록 후 한 달의 기간이 경과하면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승인해 주었고 아마 고용허가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우려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고용허가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려면 그 정책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보완,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만 덜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吳世勳 위원께서도 아까 누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과거에 있던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만들어졌던 문제들보다도 고용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용허가제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시겠다면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 문제를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준비 정도나 자세를 보면 불법 체류자의 수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임계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서 이들을 합법적 신분으로 바꾸어놓으면 현재 초래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고용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들이 일을 잘못된 것이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의 의도나 의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徐秉洙 委員** 다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해서 좀더 분명한 의지나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노동조합 측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임금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썩 외국 노동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가사의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徐秉洙 委員**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 간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宋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溪輪 위원 질의하세요.

○**申溪輪 委員** 내일 또 토론이 있을 테니까 오늘 나온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것이 93년입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申溪輪 委員** 93년이니까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10년 동안 성과와 문제점들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충분히 도출되었고 의견도 표출되었습니다.

저도 94년도인가 산업연수생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송출과정에서의 비리도 제가 조사한 적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양국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가를 지적한 바가 있고 14대 국회에서 백서로 만들어서 노동부에 제출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보아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1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난관이고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미 이 법안 준비를 몇 차례 했습니다. 14대 때도 담당하시는 분과 제가 협의해서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법안을 만들었다가 공식적으로 제출 못 하고 그만둔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제출되었다가 이른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의 반발과 반대에 의해서 당정협의과정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보는 데에 의해 문제해결의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를 정작 중소기업에서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全在姬 위원의 말씀은 상당한 임금상승의 우려 그리고 한계 영세기업의 도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노동부에서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94년경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바라보았을 때 송출비리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리, 그때 돈으로 여비 이외에 300만 원을 주어야 연수생으로 뽑혀서 송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 뒤로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측 파트너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안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성과, 문제점, 이것을 중소기업중앙회 자신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자신이 이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있는지 또는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특별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보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申溪輪 委員** 아까 이해할 수 없는 사태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은 단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수생 제도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렇게 추측합니다.

○**申溪輪 委員**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과 정작 이 사회의 중요한 섹터인 중소기업 사람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이것이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임금이 올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 다른 면도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조사나 홍보나 다른 방식의 작업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나름대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했고 또 이런저런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아직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는 중소기업 50군데 정도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고용허가제 도입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힌 것 등등은 자그마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申溪輪 委員**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는 기업명단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 홍보를 강화하고 두 번째, 이분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들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논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

력을 경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선뜻 응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申溪輪 委員**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한다면 불법 체류자를 쓴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식의 여론조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임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일할 사람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저임금으로 이 상태를 더 유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꼭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부지런히,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답을 하고 있고 인건비 수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중소기업이 20%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申溪輪 委員** 장관님께서도 경제학을 잘 아시니까 알겠지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임금 차이가 그렇게 현격하게 나면 높은 곳을 향해서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이나 미국에 간 것이 임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나는 곳에 기업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높은 곳에 노동자가 찾아갑니다.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인 제도장치로서 산업연수생 제도로 임금을 저임금으로 묶어 놓은 것 자체가 모순이고 여기에서부터 오는 갈등이 지금 현재의 연수생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용허가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것을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넘어간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반복되어서 앞으로 정말 곤란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 독일의 경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독일의 경우에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동허가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고용허가제의 폐지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독일에는 노동허가제하에서 7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불법체류율은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다수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78%가 넘지 않습니까?

○**申溪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勳錫** 申溪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의사일정 제34항, 의사일정 제37항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3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과 구두질의 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을 충실히 작성하여 법안소위 시작 전인 4월 17일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효과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全在姬 委員** 예, 환경부 법률안 심사와 관련

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 총 26건의 법률 중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안은 제정법안입니다.

물론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제정법은 공청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이 법안이 회부되었지만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회의에 없었기 때문에 죄송한데 환경부 법률안 심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국회법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서면질의로 받아서 제가 법률안 심의에 참고할 것이고 허락한다면 공식적인 서면질의 답변을 받아서 법률안 심사 시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하여 주십시오.

○**委員長 宋勳錫** 지금 全在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제정법안 몇 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의 필요성 검토를 하셔서 공청회를 결정해 주시면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면답변에 대해서 25일까지 보내달라고 한 것은 모레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니까 全在姬 위원님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내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참 조)

【제안설명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 발의

제안설명서

국회의원 김원길

김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훈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데 정보부족, 입증 곤란 등의 사유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안 3조 1항),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6조)

또한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알 수 없으며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케 하고(안 제4조)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또한 사업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가능케 하고(안 제8조 제1항),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혔습니다.(안 제11조 제1항)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본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을 원안대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環境・交通・災害等に関する影響評價法中

改正法律案

국회의원 李相洙

새천년민주당 李相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제도이나,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고, 영향평가대행계약을 다른 공사계약과 분리하도록 하여 보다 독립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환경영향권역에서의 유사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서에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스코핑제도의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도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도화·

전문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이 그 기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 제정

제안이유

안녕하십니까? 이부영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2002년 9월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 지구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재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사회적 시스템인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때에 전체폐기물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특정 건설자재(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목재)의 분별해체 및 재자원화 촉진과 건설폐기물 재자원화 대상 건설공사의 수주자에게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특정건설자재폐기물에 대하여 재자원화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해체공사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생자원의 충분한 이용 및 폐기물 감량 등을 유도해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자원화를 위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건설 발주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특정 건설자재폐기물배출자의 의무에 순환자원의 재활용 및 재생이용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순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然環境保全法律中改正法律(案)

제안설명

국회의원 박시균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 박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보호는 물론,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해야만이 수려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비환경친화적인 시설물로부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파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인류의 보편적인 자연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생태통로”를 만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의 개정을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장 관
차 관
기획관리실장
정책환경국장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폐기물자원국장
노동부
장 관
차 관
기획관리실장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국장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韓 明 淑
郭 決 鎬
李 圭 用
奎 尹 成
金 榮 和
高 允 和
柳 枝 榮

權 奇 洪
朴 吉 祥
鄭 秉 錫
崔 炳 勳
盧 民 基
宋 永 重
河 甲 來
金 憲 洙
朴 鎔 雄

○出席委員(11人)

金 德 圭 金 樂 冀 朴 仁 相 朴 赫 圭
徐 秉 洙 宋 勳 錫 申 溪 輪 吳 世 勳
張 光 根 全 在 姬 洪 在 馨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河 鍾 範
전 문 위 원 李 正 樹

○政府側參席者

환 경 부